아이웰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0.03.0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부설 아이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기관 운영,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센터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-7번지에 둔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(권역권 내)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제3조(설립목적) 센터는 본 대학의 학부·학과와 연계된 교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(콘텐츠 포함)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교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사업

제4조(사업범위) 센터의 주요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·유아, 초등학생, 학부모 및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세미나, 심포지엄,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
3. 개발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교사양성교육과정 운영
4.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
5.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)
6. 본 대학 재학생의 현장실습교육
7.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장 운영조직

제5조(구성원)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둔다.

1. 센터장 1인을 둔다.
2. 제반 사무업무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(제공인력 포함)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구성원의 직무)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구성원을 지휘·감독한다.
2. 별도 인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 및 직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조직운영의 원칙)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한다.

1.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, 제공받을 수 있다.
2. 센터는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·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.
3. 센터의 구성원은 교육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

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이웰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9조(구성) 1.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
2.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4.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규정의 제·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장 재정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회원입회비, 각종 보조금, 연구비, 자체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(회계집행)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.

제6장 인권보호

제14조(이용자 인권보호) 센터의 구성원은 성·연령·종교·경제상태·정치적 신념·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교육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, 이용자 모두를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용자 사생활보호) 센터의 구성원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(구성원 인권보호) 센터의 구성원(제공인력을 포함한다)은 누구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7장 교육·서비스 품질보장 및 배상책임

제17조(교육·서비스 품질보장) 센터는 교육·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보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인지하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.
2. 일상생활·사회참여·종교생활·서비스 이용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.
3. 이용자의 욕구·문제·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교육·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교육·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4. 이용자에게 제공한 교육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5. 이용자의 욕구·문제·기능·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배상책임) 센터의 구성원(제공인력을 포함한다)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1. 구성원이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용자와 그 가족은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2. 제1호에 따른 사건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한다.

제8장 기타

제19조(해산) 센터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.
제20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